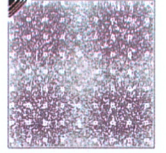
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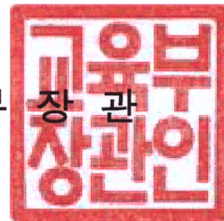
교육부

수신 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
(경유)

제목 교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제한에 따른 조치 요청 회신

1. 관련 : 시험2019-114호(2019. 4. 23.) 「교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제한에 따른 조치 재 요청」
2. 귀회에서 우리부에 교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입찰조건에 일부 기관에서 "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"로 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따른 용역 책임기술자의 제한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.
3. 우리부에서 2018년 1월 1일 전면 개정된 「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」과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「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」에서는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8페이지 1.6.1 내진성능평가의 책임구조기술자에서 정하고 있음
4. 아울러, 내진성능평가용역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이에 관해서는 각 사업의 발주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교육부 장관



주무관

황남철

시설사무관

윤갑천

교육시설과장

전결 2019.5.27.
정영린

협조자

시행 교육시설과-5758

(2019. 5. 27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(어진동, 교육부)14동

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262

팩스번호 044-203-6305

/ cadr13@korea.kr

/ 부분공개(5)